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추진 방법을 개선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피해보상 요건, 산정기준, 피해 조사방법 등 변경(안 제4조~제8조)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 합 의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 피해보상률의 경우 작물별로 생육단계가 상이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피해가 지속되는 지역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하나 피해보상에만 의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